

# 대구예술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제정 2009.10.09. 교무위원회)

(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20.03.09.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학칙」 제73조에 따라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체평가의 정의)** 우리 대학교가 대학 자체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자문위원회 등)** 우리 대학교는 자체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및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학생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및 학술정보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또한 학부모, 지역산업체 및 전문가 등 교내·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3.09.)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 기본 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와 개선대책에 대한 총장의 자문
4. 기타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연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평가 영역별 전문성 있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위원회의 기능)**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지표개발
2. 자체평가 계획과 평가 실시
3.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4. 자문위원회와 총장에게 자체평가 결과보고
5. 기타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평가방법)** ① 기획처장은 자체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0.03.09.)

② 기획처장은 자체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계획을 전 부서에 사전 공지하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03.09.)

**제9조 (평가기준)** 자체평가 기준은 자문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

에 의하여 평가영역,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자체평가주관부서)**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은 기획처 기획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20.03.09.)

**제11조 (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① 기획처장은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한다.(개정 2020.03.09.)

② 자체평가의 결과는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교육여건 개선과 대학특성화 정책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